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13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6. 11.

다. 회 부 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귀임업인·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개정안은 귀임·귀산촌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정착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 지원정보 확인, 지원금 환수 및 벌칙 조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6호의2,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29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귀임업인”이란 산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기 위하여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3. ~ 6. (생략) <u><신설></u>	3. ~ 6. (현행과 같음) <u>6의2. “귀산촌인”이란 임업인이 아닌 사람 중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u>

현행	개정안
7.·8. (생략)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생략) ⑦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u><신설></u>	<u>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u> 7.·8. (현행과 같음)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제24조, 제24조의2,</u> ----- ----- ----- ----- -----. ⑧·⑨ (현행과 같음) <u>제24조의2(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 및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u>②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귀임·귀산촌 현황과 전망</u>

현행	개정안
	2. <u>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u> 3. <u>귀임·귀산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4. <u>귀임·귀산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u> 5. <u>귀임·귀산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u> 6. <u>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주거, 생활 및 임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u> 7. <u>귀임·귀산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u> 8. <u>그 밖에 귀임·귀산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u>산림청장은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u>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u>

현행	개정안
<u><신 설></u>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귀임업인·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하거나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임·귀산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24조의4(귀임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이 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 대통령령으로

<신 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임업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임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귀임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4조의5(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생활안정,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 <u>1. 귀임업인·귀산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u> <u>2. 귀임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u> <u>3. 귀임업인·귀산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거나 삼</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립주택 공동체 시설을 조성하</u> <u>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u> <u>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u> <u>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u>제24조의6(귀임·귀산촌 지원에</u> <u>관한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u> <u>확인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u> <u>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u> <u>른 귀임·귀산촌 지원 및 사후</u> <u>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u> <u>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u> <u>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u> <u>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u> <u>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u> <u>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u> <u>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u> <u>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u> <u>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u> <u>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u> <u>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재배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u>제29조의6(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5까지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 제32조의2, 제33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u> <u>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u> <u>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u>

현행	개정안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③ <u>산림청장은</u>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u>산림조합이나</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u>-----<u>산림조합,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나</u>-----.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3항에 따라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 설></u>	<u>탁받은 귀임·귀산촌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조합,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u> <u>제32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33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u>

현재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 지원 법률 근거 】

법률명	관련 조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현행법 상 “농업” 및 “농업인”에 “임업” 및 “임업인”이 포함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중 산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산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¹⁾ 귀산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소멸위기 대응이 필요하고,

【 2024년 산촌기초조사(귀산촌 실태조사 포함) 결과 】

구 분	산 촌('14년)	산 촌('24년)
법적근거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u>산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산촌인</u>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u>산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산촌인</u>
대상지역	<u>전국 466개 읍·면</u>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지역)	<u>전국 468개 읍·면</u>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지역)
산촌면적 ²⁾	<u>436만ha</u> * 산림 353만ha(81%), 산림 외 83만ha(19%) * 국유림 116만ha(33%), 공유림 31만ha(9%), 사유림 206만ha(58%)	<u>426만ha</u> * 산림 345만ha(81%), 산림 외 81만ha(19%) * 국유림 118만ha(34%), 공유림 30만ha(9%), 사유림 197만ha(57%)
산촌인구 ³⁾	<u>1,436천명</u> * 전국 인구 : 51,328천명(산촌은 2.8% 수준) * 농촌 인구 : 9,505천명(산촌은 15.1% 수준)	<u>1,403천명</u> * 전국 인구 : 51,217천명(산촌은 2.7% 수준) * 농촌 인구 : 9,050천명(산촌은 15.5% 수준)
귀산촌인	<u>62,824명</u> * 귀촌 인구 : 439,535명(귀산촌은 14.3% 수준) * (참고) 귀농 인구 : 17,976명 귀어 인구 : 1,350명	<u>48,519명('23년 기준)</u> * 귀촌인 : 400,093명(귀산촌은 12.1% 수준) * (참고) 귀농인 : 13,680명 귀어인 : 904명

※ 자료: 산림청

1)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중 산촌지역 75개소(행정안전부 지정 / '24.9월 기준)

2) 산촌면적은 426만ha('24년)로 전 국토의 43%

3) 산촌인구는 140만명으로 전국의 2.7% 수준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및 생산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⁴⁾ 현행 귀농어·귀촌인 지원 제도로는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⁵⁾

【 귀농·귀촌 및 귀산촌 지원제도 비교 】

구 분	귀농·귀촌 지원제도	귀산촌 지원제도
법적근거	「귀농·귀촌어법」에 따른 '귀농업인·귀촌인' 정의 및 지원	「귀농·귀촌어법」에 '귀임업인, 귀산촌인' 포함
대상지역	농촌 전국 1,411개 읍·면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 읍·면 지역)	전국 468개 읍·면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지역/ 모두 읍·면 지역으로 농촌에도 포함)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귀촌어법' 제15조 (창업 3억, 주택 7,500만원)	별도 전용자금 없으나 귀농 자금 일부 활용 (임업은 제외)
주거지원	체류형 지원센터, 임대주택, 빈집 지원	산촌 빈집 활용 일부 시행
교육훈련	귀농귀촌 종합학교, 전국 농업기술센터 교육	임업진흥원 귀산촌 아카데미
체험프로그램	귀농귀촌 체험마을 운영	없음
일자리 연계 (청년지원)	농작업 연계, 청년농 유지 등 (청년창업농 연 최대 1,200만원)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 미비)
세제지원	농지취득세 감면, 주택 지원	없음
전담기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전국)	산촌활성화지원센터(2개)

※ 자료: 산림청

4) 임가소득은 38백만원으로 농가소득 51백만원 대비 76%, 어가소득 64백만원 대비 60% 수준 ('25 산림통계자료)

5) 산림청에 따르면, 귀산촌 정착 지원 법제화, 산촌특별회계 신설 등 요구('25.5.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및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 정책 실효성 있는 지원 요구('25.6, 한국전문임업인협회) 등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산촌 인구 감소 대응, 임업인 소득안정 및 산촌 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정의에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이 포함되어 있고,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 해석 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안정적인 산촌 정착 정책 및 지원을 위하여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 정의, 정착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나,

귀임업인의 정의와 관련해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기 위하여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농촌 등 산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업 종사자나 희망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산촌’을 ‘읍·면’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둘째,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촌의 소득 증대, 주거환경 개선,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산촌진흥 기본계획’(지자체는 ‘산촌진흥촉진계획’ 수립)을 10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⁶⁾

‘산촌진흥기본계획’에 귀산촌 관련 실태조사, 정착 및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별도의 ‘귀임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은 현행법 상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산촌진흥촉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여, 유사·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셋째, 개정안 제24조의5(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제2항 중 ‘산림주택 공동체 시설’은 별도의 정의가 없고, 행정 및 일상 용어로도 쓰이지 않아 의미가 모호하므로 삭제하거나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귀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령 규정은 불필요하고, 농업 및 어업과 동일한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① 산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② 현행법의 체계, ③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유사한 조문 구성을 따르고 있음.

7)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

【 관련 조문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명	관련 조문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법률명	관련 조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의 처

02)6788-5423
